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24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박홍배 · 신정훈
전진숙 · 장철민 · 문진석
황운하 · 윤종균 · 임호선
송옥주 · 허 영 · 손명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,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.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.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.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조, 제15조, 제16조 개정).

법률 제 호
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8.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1명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제7호”를 각각 “제8호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구성) ① 금융통화위원회 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1. (생 략) 2. <u>한국은행 부총재</u> 3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 ③ 제1항제3호부터 <u>제7호</u> 까지 의 위원은 금융·경제 또는 산 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 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 ④ (생 략)	제1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하는 위원 1명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13조제 1항제3호부터 <u>제7호</u> 까지의 위 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 임할 수 있다.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<u>제7 호</u> 까지의 위원 중 전임(前任)위 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	제15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 -----

아니한 위원의 경우(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)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보궐위원의 임기) 제13조 제1항제3호부터 <u>제7호</u>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,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6조(보궐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<u>제8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